

선 거 규 칙

1991년 12월 13일 제정
2006년 06월 22일 개정
2015년 10월 14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조합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지부장, 부지부장, 대의원, 회계감사를 공정히 선거함으로써 전국대학노동조합 전주대학교 지부(이하 '조합'이라 한다.)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인의 정의) 이 규정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공고일 현재 전국대학노동조합전주대학교 지부 (이하 '조합원'이라 한다) 으로 가입 된 자를 말한다.

제3조(선거사무의 협조) 조합의 임원 및 부서는 선거사무에 필요한 협조의 요구를 받을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임기) ① 이 규칙에 의하여 선출되는 지부장, 부지부장, 대의원, 회계감사(이하 '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임기가 시작되는 연도의 9월 1일부터 시작하여 임기 만료년도의 8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보궐선거에 의한 임원의 임기는 당선된 날로부터 개시되어 전임자의 잔여 임기 기간으로 한다.

제5조(선거의 비용)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용하는 선거비용은 조합에서 부담하여, 후보자 추천, 선거관리요원의 활동 및 후보자 자신의 선거운동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후보자가 부담한다.

제 2 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6조(선거권 및 피선거권) 선거공고일 현재 기 조합원으로 가입된 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다.

제7조(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는 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자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다.

1. 선거공고일 후라도 선거일 이전에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 자
2. 징계 기타의 사유로 조합원 자격에 제한을 받고 있는 자

제8조(선거인 명부작성) 사무국장은 선거일 3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장 후 보 자

제9조(선거의 공고) 임원 선거공고는 선거일 5일전까지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제10조(등록) ① 임원 후보자의 등록은 선거공고일 익일 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마감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는 그 익일까지로 한다.

1. 후보자 등록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가)
2. 후보자 추천장(지부장은 10인 이상, 부지부장 7인 이상, 회계감사 5인 이상, 대의원 1인 이상의 조합원이 서명 사인한 추천장 첨부) (별지 제3호 서식 나)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 1인이 각각의 후보자 2인 이상을 추천할 수 있다.
- ③ 후보자의 등록신청서 접수는 10:00-16:00까지 실시하며, 우편 등록은 인정하지 않는다.
- ④ 후보자의 수가 정원에 미달 될 시는 전 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선관위의 결정에 의하여 총회에서 1인 이상의 구두추천에 의해서도 등록을 인정할 수 있다.

제11조(등록의 무효) ① 후보자 등록 후에 후보자가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또는 제 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때는 그 등록은 무효가 된다.

- ② 등록이 무효 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후보자에게 그 사실을 명시하여 등록무효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후보자 사퇴의 신고) 후보자가 입후보자를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후보자 등록에 관한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사퇴하거나 자격상실 또는 자격이 무효 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가), (나)에 의하여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4 장 선 거 운 동

제14조(선거운동) 선거운동은 공명정대하게 하여야 한다.

제15조(연설회) ① 연설회는 투표실시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 시기에 1회에 한하여 실시한다.

- ② 연설회 시간은 개인별 5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5 장 선 거 일 과 투 표

제16조(선거일 공고) ①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는 임기만료 30일 내지 10일전에 실시하여야 하 되, 선거일은 선거일 전 5일에 선관위 위원장이 공고하여야 한다.

- ② 지부장, 부지부장, 대의원, 회계감사가 궐위된 때엔, 궐위된 이후의 총회에서 보궐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 ③ 2항에 의한 선거를 실시할 때는 노동조합지부장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총회의 일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17조(선거방법) 선거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 1. 조합원은 지부장 1인 1표, 부지부장 및 회계감사 1인 2표, 대의원 1인 13표를 투표하며,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 한다.
- 2. 대의원은 직종 및 성별을 고려하여 13명 이내로 한다.

제18조(투표소설치) ① 투표소는 총회 장소에 별지 제1호 도면에 의하여 설치한다.

- ② 투표소의 기표장소는 타인이 엿볼 수 없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식도 할 수 없다.
- ③ 후보자, 후보자추천 선거관리요원은 투표소의 설비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투표시간) ① 투표는 선거관리위원장이 투표개시를 선언한 후 시작하고, 시작 후 2시간 이내에 투표를 마감한다.

- ② 투표를 개시하는 때에는 참관인에게 투표함 및 기표소내외의 이상 유무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부재자 투표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제20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① 투표용지는 별지서식 제6호에 의하며, 투표함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규격을 결정하여 제작한다.

- ② 투표함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수량을 조정하여 사용한다.

제21조(투표용지의 수령) ① 선거인은 투표소에서 선거관리위원 앞에서 선거인 명부에 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 1매를 받아야 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인쇄된 투표용지 및 직인을 봉합하여 보관하였다가 선거일에 선거관리 위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후보자 추천 관리요원이 이를 가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요원이 없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인을 거부할 때는 그 권한을 포기하는 것으로 보고 그 사유를 봉투에 기록한다.
- ③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는 선거관리위원은 사인을 날인한 후 교부한다.
- ④ 투표용지는 지부장, 부지부장, 대의원, 회계감사별로 1인 1매씩을 교부하며, 선거인이 투표지를 오손한때라도 다시 교부하지 않는다.

제22조(투표의 제한) 선거권이 없는 자는 투표할 수 없다.

제23조(기표절차)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서 해당 후보자의 기표란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않게 접어 선거관리위원 및 참관인(후보자 추천 관리요원)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제24조(기표방법) 선거인이 투표를 할 때는 기표의 방법으로 준비된 도구를 가지고 하여야 한다.

제25조(투표참관) ① 참관인은 제 선거의 참관인이 된다.

② 투표참관인은 투표사무에 간섭하거나 투표를 권유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참관인은 투표에 대한 참관을 자유로이 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는 선관위를 통하여서만 하여야하고, 선관위는 참관인의 정당한 시정요구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26조(투표함의 봉합) 투표가 끝나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이 사실을 선포하여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함에 관인을 찍어 봉합하고 참관인이 가인을 한다.

제27조(투표인 명부의 확인) 투표가 완료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정리하여 선거인 명부에 유권자수, 투표자수, 불참자수를 확인 기록한 후 출석한 선거관리위원회 전원이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 6 장 개 표

제28조(개표) ① 개표는 투표가 끝나고, 투표 장소에서 바로 시행하며,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행한다.

② 개표의 참관인은 투표시의 참관인이 계속 참관한다.

③ 개표 참관인의 지위 및 의무는 투표참관인의 지위를 준용한다.

제29조(투표함의 개함) ① 투표함을 개함할 때는 그 뜻을 선포하고 출석한 위원 전원과 함께 봉합상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개함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장은 투표함을 개함한 후 투표지의 매수를 계산하여 투표록의 투표자수와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0조(개표의 방법) ① 지부장, 부지부장, 대의원, 회계감사 후보자별 성명을 적어놓고 선거관리 위원 1인이 득표내용을 발표하고, 1인은 이를 정자로 기록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 개표는 선거관리위원과 참관인의 주재로 개표한 후 선거관리위원장이 최종 집계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31조(무효투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무효로 처리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난에도 기표를 하지 않은 것
3. 준비된 도구 이외의 방법으로 기표한 것
4. 어느 쪽에 기표한 것인지 확인하기가 불분명한 것
5. 기표내용이 둘 이상 후보자의 기표 란에 중복 기표된 것
6. 개표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투표한 것
7. 대의원 투표시 규정이상의 후보에게 투표한 것

- ② 투표용지가 오손된 경우라도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이냐가 명확한 것은 유효 표로 처리한다.

제32조(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개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결정은 선관위원 3/2출석에 과반수이상으로 의결한다.

제 7 장 질서유지 및 자료의 보관

제33조(질서유지)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선거인 및 기타 관계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4조(투개표소의 출입금지) ① 투표자 및 대기자. 선거관리위원 및 참관인 이외의 자는 투표장 4방 10m 이내로 접근하여서는 안 된다.

- ② 선거관리위원 참관인이외의 자는 개표소 4방 10m 이내로 접근하여서는 안 된다.

제35조(투표지, 선거인명부, 기타 관계서류의 보관) 투표지, 선거인 명부 기타 선거와 관련된 모든 서류는 이를 사무국장에게 인계하여 당선인의 임기동안 보관하도록 한다.

제 8 장 당선인

제36조(당선인의 결정)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1. 지부장은 투표자수가 재직선거인 과반수이상이어야 하고 투표가 과반수이상의 득표를 한 자
 2. 부지부장 및 회계감사는 투표자수가 재직선거인의 과반수이상이어야 하며, 최고 득표자 순위 2위 이내에 든 자.
 3. 대의원은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대의원 득표순으로 13위 이내에 든 자.
 4. 회계감사는 다수득표자 2위 이내에 든 자.
- ② 총 득표수가 동수일 때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지부장의 경우에는 재투표를 실시한다.

제37조(당선인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인이 결정되면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제 9 장 재선거 보궐선거

제38조(재선거)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투표결과 당선자가 없을 때
2. 천재, 지변 기타 재선거의 사유가 생긴 때
3. 선거의 무효 결정이 있을 때

- ② 1항 1호의 사유에 의한 재선거는 개표직후 바로 실시하며 당선인이 나올 때까지 실시

한다.

③ 재선거는 그 사유가 해당되거나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39조(보궐선거) 임원이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0조(일반관례의 준용) 이 규칙에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이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르거나 준용하여 시행하되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1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